

2012.05.04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순서

순서 2

들어가며 3

실태조사 설문결과 분석 4~8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침해 9~19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20~22

참고기사 23~27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레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본 100일은 ‘축하’ 보다는 앞서 말했듯 ‘암담’ 합니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가 학생인권조례 정착화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200일, 300일, 돌잔치에서는 변화하는 학교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실태조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태조사 설문결과 분석

조사 기간: 2012. 4. 20~ 2012. 4. 29 (총 열흘)

조사 대상: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조사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작위 설문조사 진행

분석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Excel 2007/ SPSS 12.0K for windows/ 계산기

오차범위: ± 2.8

● 응답자 분포

총 응답자: 1,275명

표1. 성별 분포

여성	남성	기타	무응답	전체
64.9% (828)	34.1% (435)	0.5% (7)	0.4% (5)	100% (1275)

표2. 학교 운영주체 분포

국/공립	사립	무응답	전체
54.0% (688)	45.6% (581)	0.5% (6)	100% (1275)

표3. 중/고등학생 분포

중학생	고등학생	무응답	전체
45.5% (592)	53.4% (681)	0.2% (2)	100% (1275)

표3-1. 중학교 종류별 분포

일반 중학교	기타 중학교	중학생 전체
98% (580)	2.0% (12)	100% (592)

표3-2. 고등학교 종류별 분포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63.6% (433)	28.0% (191)	3.4% (23)
특수목적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	전체
2.5% (17)	2.5% (17)	100% (681)

표4. 학년 분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무응답	전체
7.2% (92)	16.2% (207)	23.1% (294)	22.4% (286)	13.7% (175)	16.9% (215)	0.5% (6)	100% (1275)

1. 서울학생 80%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안내 받지 못해.”

올 해 1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려 80.9%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표5].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조례 및 권리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이 지난 지금,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교육과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5.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의 안내 여부에 대한 응답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무응답	전체
18.5% (236)	80.9% (1031)	0.7% (8)	100% (1275)

자연히 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 인지도 또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6]. 학생인권조례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대답과 전혀 모른다는 대답이 각각 34.8%, 22.1%로 절반(56.9%)을 넘었다.

표6. 학생인권조례 인지도에 대한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13.1% (167)	29.7% (379)	34.8% (444)
전혀 모른다	무응답	전체
22.0% (280)	0.4% (5)	100% (1275)

그나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의 안내나 교육이 아닌, 개인의 관심에 따라 직접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수치들은 학교에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정착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7. 조례인지도와 학교에서의 안내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조례인지도에 대한 %)

	안내를 받은 적 있다	안내를 받은 적 없다	합계
매우 잘 알고 있다	37.7% (63)	61.1% (102)	100% (165)
알고 있다	31.7% (120)	68.3% (258)	100% (378)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9.9% (44)	89.9% (399)	100% (443)
전혀 모른다	3.2% (9)	96.4% (207)	100% (216)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와 같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교사들에 의해 전달되는 사례가 있었음.

2. 아직도 끊이지 않는 학생인권침해, 교과부조차 금지한 체벌 또한 여전히.

학교 안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인권침해 문제 중 대표적인 10가지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로 거론되는 ‘두발규제’가 존재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2.5%에 달했으며, 작년 3월 교과부가 전면 금지한 체벌은, 금지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48.8%) 학교 내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소지품 검사/압수, 강제 방과 후 학습, 성추행/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침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수집한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 방법상에서의 실수로 제대로 사립학교 중 종교계 사학의 종교 강요에 대해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를 통해 종교과목강요, 종교물품강매 등 종교사학의 종교 강요, 차별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표8.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답변

인권침해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제12조 두발규제	72.5% (925)	26.4% (336)	1.1% (14)	100% (1275)
제6조 체벌	48.8% (622)	50.0% (637)	1.2% (15)	
제25조 과도한 벌점 및 징계 남용	45.4% (579)	53.3% (679)	1.3% (17)	
제9조 정규수업과정 이외 학습 강요	23.9% (305)	74.9% (955)	1.2% (15)	
제16조 예배, 법회 등 종교과목 강요	11.8% (150)	86.7% (1106)	1.5% (19)	
제13조 일괄적인 휴대폰 강제압수	43.1% (550)	55.8% (712)	1.0% (13)	
제13조 일괄적인 소지품검사 강제실시	16.5% (210)	82.0% (1046)	1.5% (19)	
제5조 차이로 인한 차별	22.3% (284)	76.5% (975)	1.3% (16)	
제17조 표현의 자유 제한	18.0% (230)	80.6% (1028)	1.4% (17)	
제18조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규제	18.1% (231)	80.3% (1024)	1.6% (20)	

3. 학생들 89%, “전체 학생 참여 없고, 의견 반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6개월 이내에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칙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실태조사에서 학교의 교칙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고 대답한 학생이 34.7%로 가장 많았다. 교칙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대답한 경우는 7.8%에 불과했다.

표9. 교칙 변화 여부에 대한 응답

바뀌었다	바뀌는 중이다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7.8% (99)	26.7% (341)	34.7% (443)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29.8% (380)	0.9% (12)	100% (1275)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10]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거나, 수렴해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또한 [표9]의 결과를 보면 교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29.8%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응답에 이어 2위를 차지해, 학교의 교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표10. 학교 안의 교칙 개정 절차에 대한 응답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는다	
9.3% (118)	25.1% (320)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	
11.7% (149)	28.2% (359)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	무응답	전체
23.9% (305)	1.9% (23)	100% (1275)

아래 [표11]에 따르면 교칙이 바뀌었다고 대답한 학생들, 바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도 각각 64.6%, 88.8%가 교칙 개정과정에서 전체학생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학

생의 의견만 들었거나, 수렴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제대로 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11. 교칙 변화 여부와 학교 안의 교칙개정 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교칙 변화 여부에 대한 %)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는다.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	전체
바뀌었다	35.4% (34)	25.0% (24)	20.8% (20)	9.4% (9)	9.4% (9)	100% (96)
바뀌는 중이다	11.2% (38)	41.1% (139)	14.8% (50)	22.2% (75)	10.7% (36)	100% (338)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1.8% (8)	14.0% (62)	7.7% (34)	35.9% (159)	40.6% (180)	100% (443)
모르겠다	9.9% (37)	25.3% (94)	12.1% (45)	31.2% (116)	21.2% (79)	100% (380)

위의 수치에서 보여 지듯이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형식적 절차로만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에서는 교사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체벌을 당하거나, 벌점을 받는 경우 또한 있었다. 즉 학생참여, 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인권 보장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1.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고 실행된다고 했던 그날을 말이다. 나와 친구들은 서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모를것이다...하지만... 그 후 바뀐것이 하나 없다.

우리학교는 지역적으로 인권탄압으로 유명한곳이다. 할 말이 많으나 2012년도 새 학기 이후 일어난 학생인권침해사례를 적으라 했으니 그것에 맞게 적어보겠다.

첫 째, 아직도 두발검사를 한다.

나는 최소한 수업중에 들어와서 머리를 검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심지어 이미 사라진 일이기에 학생인권조례에서 깊게 토론되지도 않았던 문제였다. 하지만 올 해 3월, 나는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학교교실에 들어와서 두발검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 또한 피해자가 되었다.

둘 째, 두발 규정이 무척 심하다.

우리 학교 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은 '단정한 스포츠머리'이다. 스포츠머리가 무슨 뜻인지는 다들 잘 아리라 생각한다. 나는 중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머리를 파마 염색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지만 최소한 머리길이가 짧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는 결론이 났다. 그나마 학생인권조례로 나아지나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도 반에 들어와서 머리 검사를 한다. 시간이 있다면 조사단을 학교로 파견해보아라. 학생들의 두발이 '이사장님'의 시선에서 아주 단정하게 되어있을 것이다. 또 주변 미용실로 조사단을 파견해보아라. 보인고등학교를 아주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셋 째, 강제 야자는 아직도 남아있다.

자율권? 웃기는 소리이다. 아 물론 우리가 싸인을 하기는 했다. 선생님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다. 내 친구가 싸인을 하지 않았다가 선생님과 한 판 승부를 벌인 후 싸인을 하는 모습도 보았다. 강제적자율권....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넷 째, 체벌하면 또 우리학교 아닌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다."야, 너 순대냐?" "아니. 떡볶이야ㅋㅋ" 여기서 순대와 떡볶이는 맞은 장소에서 생기는 명(튀어나오는 부분)을 말한다. 체벌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섯 째, 휴대폰에 관해서이다.

우리 학교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학교는 자랑스러운 3무학교이다. 3무 중 하나는 핸드폰이다. 핸드폰을 가져오면 쓰던 쓰지 않았던 무조건 뺏는다. 나는 심지어 학교에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핸드폰을 색출하고 빼앗은 장면을 여럿 목격했고, 나도 그 장면의 피해자이다.

여섯 째, 학생의 활동은 없다.

학생회? 우리학교에서 학생회는 대학 갈 때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동아리활동? 지원을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외에도 나열하라면 끝까지 할 수 있으나... 이정도만 하고 끝내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기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한 것이다.

나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바라지는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이 되지 않을 권리이다. 위의 말한 것이 사람이 받을 대우였는가? 나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라는 회의감에 빠진다. 우리는 공부스트레스로도 족하니 부디 더 이상의 인권탄압을 없애, 학교에서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어라.

사례 2.

저희학교는 두발검사도 꼬박꼬박 합니다. 남자는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안 되고, 구렛나루는 기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자들은 뒷머리가 어깨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아침 조례시간에 핸드폰을 걷는 가방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보관 하여야 합니다.

등학교 시에 구두를 무조건 신게 합니다. 신지 않는다면 아침마다 또래지킴이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선도부). 그 학생들이 매일 매일 검사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무조건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전교생 모두가 하게 됩니다.

사례 3.

같은 반 한 여학생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남자선생님께서 그 여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확 들어 올려서 귀걸이를 보더니 큰 소리로 몇 개나 꿇었는지 얘기 (하나!둘!세!넷!)하고 3일(?)동안 교무실에 와서 복장검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선생님께서 “너네 학생인권조례 읽어 본 사람?”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까 해서 손 안 들었습니다.

“너네 머리 염색하고 파마하고 오는데 그거 ‘인권조례에 두발규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한 규정대로 해라.’라고 써 있어~내일까지 파마—염색 다 풀고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례 4.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어중간하게 추운 날에는 가디건,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매번 겉옷을 입으면 잡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봅니다.

생활상담부○○○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옵니다. 날라리들이 혹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할까 그러는데요. 생활상담부에 남자선생님밖에 없는 것도 아는데 남자가 막 여자화장실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례 5.

-겨울에 추운데 겉옷 색깔에 제한을 받고 유명하고 비싼 브랜드 제품이면 뺏는다.

-두발 머리색, 길이 등을 단속하고 규제한다.

-선생님들은 체벌을 못하게 한다며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신다.

-학생들이 여러 차례 학생회회의와 학급회의 때에 겉옷색깔의 자유, 휴대폰소지 등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례 6.

교장선생님이 지각을 했다고 때렸다!(자로 허벅지 한 대)

사례 7.

귀걸이 및 교칙에 위반되는 소지품은 일방적으로 압수함 (수업시간 실수로 끄지 못해 문자음이 들려도 바로 핸드폰 압수) 핸드폰 외에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담당 교사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함. 그래도 학생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을 뿐더러 그게 당연한 건 줄 앎. 안 들려주는 경우가 많음. 소위 등수로 나눌 때,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에게 ‘너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기도 함. 특정 과목의 경우엔 교

사가 칠판에 성적을 붙여놓기도 함. 애들이 바로 달려와서 컴싸나 매직으로 지우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은 꼭 있고 뒤에서 비쳐보면 다 보임... 교칙이 개정이 됐다던데 차이를 잘 모르겠음 TT 양말 색깔이나 레깅스 허용 같은 거 외에는 두발이나 복장의 근본적인 거는 진짜 안 바뀔 그리고 학생회한테 논의하라고 뭐라 얘기하는 지 아닌 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복장규정에 동의하라는 각서 느낌의 동의서(동의하지 않음은 없음ㅋ)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진짜 영터리임 TT 약간의 변화는 보였을 줄 몰라도 다른 학교는 그것 때문에 더 빡세게 규정 하고 있다고 하고TTT근본적인거랑 큰 거는 안 바뀔 듯 TTTTTTTTT살려주세요TTTTTTTT말해도 잘 안 들음 TTTT 얘기할 기회도 안주고TTTTTTTTTT

사례 8.

단지 학교 내 기숙사생이라며 자유를 표현할 의지조차 주려하지 않습니다.

기숙사생은 방과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석식 등 강제선택이며

칸막이가 답답해 집중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칸막이가 있는 기숙사생전용 야자실에 있어야 합니다.

체질일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종교에 의해 1학년부터 종교라는 과목의 수업을 들으며 주 5일제도가 실행 전에는 놀토가 아닌 토요일에 CA재량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채플이라는 것을 통해 종교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학교랑 같은 교를 믿는다는 학생에게는 좋은 점이나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은 딱히 들어봤자 좋은 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 5일제라 토요일에 채플을 할 수 없자 수업일수 중 CA재량활동을 위한 시간을 또 다시 채플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기가 시작 돼, 동아리와 CA를 정했음에도 한 번도 실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번 수련회로 해병대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고될 것을 알기에 불참을 한 아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뭐라 하였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불참이 아닌 참여로 되어 있었고, 장소선택을 하라는 안내장과 장소가 이미 정해진 안내장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의 인권 중 의견의 자유가 침해 된 경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례 9.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모욕감을 자주 준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본인만 더 혼내고 넌 필히 성형해야겠다. 등등...사소한 일로 자주 핀잔을 주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사례 10.

도덕선생님이 파마한 학생을 보시고 술집여자 같다고 하심.

사례 11.

동복엔 검은색 춘추복엔 살색스타킹을 신지 않을 경우나 머리규정에 걸릴 경우 외투를 입을 경우 교문 앞에서 등교 시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또한 공휴일, 토요일, 개교기념일에 학교에 나와 지습을 시킨다. 학교목사님이 쓴 책을 인성교육 17시간을 준다고 하며 책을 사도록 권유한다.

사례 12.

두발단속—구렛나루1cm(1학년.2,3학년은2cm.3cm.)

—앞머리 (눌렀을 때 눈썹이 닿으면 안 됨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 (머리를 들었을때 길면 안 됨 5cm?)

소지품검사—예고 없이 1학년 전교생대상으로 실시하구 시각디자인과(1.2.3반)는 공부 잘 한다고 주머니는 안 뒤지고 가방검사만 하는데. 건축실내디자인과(4.5.6반)랑 컴퓨터 미디어과(7.8.9반)는 주머니도 다 뒤져요 사물함은 물론.

징계—생활지도부 선생님들. 욱하세요. 훈계줄 때. “야 이새끼야”, “야 이 씨블롬야”, “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등등

사례 13.

등교할 때 치마가 올라갔단 이유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욱설을 하고 종교를 물을 때 교회 이름까지 적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책을 학교에서 팔았습니다.

사례 14.

똥똥한 애한테 신체적 비하발언. 기합을 준다. ○○○선생님이 종종 우리를 때린다. 토요일 날도 학교 오라고 강요한다,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체육수업.

사례 15.

머리에 대한 규제는 예전과 같다.

오늘 기합을 받고 왔고, 폭언은 항상 있다.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상담 감이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종교의 자유 및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대체과목은 원래 있었으나 되도록 선택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 다음 학년부터는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없게 한 걸로 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담실에서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 나도 외부인에게 얻은 정보.

일부 종교선생(=목사 혹은 전도사이다.)은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면서 나와 같은 성소수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한다.

이 학교는 기독교학교이지만, 학생 대부분은 기독교신자가 아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걷는다.

+ 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6.

머리 염색물이 빠져서 빛이 비출 때 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그런 것조차 봐 주지 않고 무조건 생활지도부로 데려가서 진술서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청소를 시킵니다. 머리로 조금 길다는 이유로 기를 때마다 자르고 검사를 받으러가는 학생이 저희학교는 많습니다. 인권조례가 실시된다하여 머리카락 교복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학교는 교복을 줄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치마가 짧은 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동복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 괜찮겠지만 하복을 입을 날씨에도 치마가 길면 저희는 땀띠도 날 것이고 여자뿐만 아닌 남자학생들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잠시 더워서 마이를 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칙위반이라며 갑자기 소지품검사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칙이 엄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하기도 많이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머리를 검은 색으로만 하고 다녀야합니까 저희학교는 디자인 학교인데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합니다. 디자인학교라서 창의성이 뛰어나야하는 교칙이라는 틀에 박힌 채 정계와 별로 살아갑니다. 저 혼자만의 불만이 아닌 제 주위의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세요요.

사례 17.

선도부가 소지품, 즉 가방 속과 사물함, 책상 속 등을 억지로 뒤집.

소지품검사는 공개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자신물건 사적인 물건 전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지않고 무조건 잡는 것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나 학생소지품을 뒤지는 행동이 과연 “선도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인가? 개인의 사적인 것은 보호해 주지 않고?

우리는 선도부에게 벼슬을 준 것이 아닌 바른 제지를 위함으로 이 처사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가 이상하다.

조금 더우면 교복을 조금 탈의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은가?

교복을 조금 탈의했다는 게 조끼탈의, 와이셔츠탈의 후 사복착용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켓을 벗어놓고 다른 교복류는 전부 착용하고 있었는데 선도부가 와서 “야 너 자켓입어라”라고 하고 나가버렸다.

교내에 들어올 때는 아무리 더워도 자켓의 단추마지막까지 꼭꼭 잠그고 들어와 교실 안에서 푸는 나다. 아무리 교복이라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내에서까지 더워죽겠는데 자켓을 입고 있어야한단 말인가? 잠시 벗어놓는 것도 안 되는 상태로?

다른 인문계에는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다루는 방법을 알며,

학생들의 자유를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면이 있는 반면, 이 학교는 전문계인데도 불구하고 교칙이 너무 강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경고를 준다.

교칙이 강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매우”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개학생이 뭐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깔깔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지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선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건어서 학교가 끝날 때 주는 것도 있다.

수업 중에 긴급전화를 걸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무실로 전화를 걸라고? 그러면 정말 1분1초가 급할 때 상황대처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고등학생 쯤 됐으니,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영어사전으로 찾아보거나 백과사전에서 검색해보는 것 이외에는, 핸드폰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찌고?

공부해라공부해라 하면서 정작 공부로 통하는 길목 하나를 막아버리는 이 학교는 대체 무슨 의도인가?

수업시간에 문자하는 아이들은 한 번 걸리면 그 아이들만 잡아서 핸드폰을 건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학교에 건의를 넣어도 제한체제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

결국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18.

선생의 출신대학이 육사라고 학교가 군대인 줄 알며 학생들을 처벌할 때 군대에서나 시키는 머리박아를 시킴

작년에 머리박아를 시킨 후 구두발로 걷어 찬 경우도 있었다고 함(글쓴이가 겪은 것은 아님)

학교의 대부분선생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인물 1-2명 정도 해당

사례 19.

수업시간 도중에 학생부선생님이 모든 반을 머리검사와 교복검사 손톱검사를 함, 조레도중에 여자애들 화장품검사와 소지품검사를 함,

점심 먹을 때도 선도부가 복도에서 있어서 검사를 함 (아주 잡고 싶어서 안달났음)

선도부가 담임선생님의 허락도 없이 그 반의 사물함을 뒤짐,

점심 먹고 반에서 쉬고 있을 때 선도부가 무턱대고 들어와 의심되는 사람의 가방을 막 뒤지고 강나감, 화장 검사할 때 와이셔츠 옷깃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면서 검사함,

머리규정이 너무 심함, 수업시간에도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생각 따윈 안 하고 막 문을 열어서 학생을 잡음 (선생님들조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등교할 때 선도부들이 2열종대로 짝 서서 너무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

교복규정도 너무 썸 (외투는 무채색과 남색밖에 못 입음, 교실 안에서조차도 더워서 자켓을 벗었는데 잡음)

사례 20.

아무 때나 들어와서 복장두발 등 검사를 했다.

급식실에서 교장선생님이 자리지도를 하면서 앞에 있는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음.

사례 21.

여전히 과마나 염색 등에 대해 별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업 중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학생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각을 한 학생을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체벌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22.

여전히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빼앗은 휴대전화의 메신저를 학생 동의 없이 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운동화 끈 색과 같은 규정도 2주일동안 전교에 지각자가 없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의는 매번 열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가 발표 된지가 언제인데 왜 우리는 두발규제가 바뀌지 않냐고 묻자 학생부선생님께서 발표는 되었지만 학교별로 시행하는 여부는 자유라고 적혀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다 하여 사실 두발규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종교과목에 대해 대체과목을 만들 수 있는지도 몰랐다(이는 학교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 미션스쿨이라 매주 금요일 1교시에 예배를 하는데 대체과목도 없을뿐더러 강당에서 다른 공부할 것을 가져가면 하지 말라 그러고(요샌 좀 덜해졌긴 하지만 3학년이라 그런 듯하다. 1,2학년은 여전히 그럴 것이다) 며칠 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벌점제 기준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었다.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

사례 23.

전체적으로 시행 전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대로다.

학기 초에 두발규정을 중심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상위기관인 교과부의 명령으로 무효화됐다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으로 규칙을 개정한다고는 했으나, 학생은 학생회위주의 의견만을 모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측 모두 윤리적 근거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투표만으로 나온 의견을 결정하고 굳혀서 결국 규정에 대한 변동은 없던 일로 되었다.

종교수업은 대체과목없이 진행되긴 하나 느슨하게 진행해서 들을 사람만 들고 자리에만 앉아있어도 상관없다.

사례 24.

체육선생님이야기인데, 제 친구는 계단을 올라가는 중인데 선생님이 뒤에서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배드민턴 채로 엉덩이를 때리시더라고요. 왜 때리냐고 하니까 무시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외투를 경비실에 갖다놓으라는 터무니없는 심부름도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가 가까이 가니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있고 술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또 수업시간에 늦게 오셨으면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운동을 안 하고 있다고 수업시간 내내 운동장을 계속 뛰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다른 체육선생님하고 수다떨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수업시간에 뜬금없이 저희를 출석번호를 기준으로 짝수, 홀수대로 나눠 줄을스라고 하더니 차례대로 나와 손바닥치기를 시켰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계속 남아서 하는 토너먼트 식이었습니다. 애들이 웅성웅성대자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너

희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되는 지 느껴보라고 하는 거라고 했나..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너네가 한심하다는 걸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제 사례가 발표물로 이용된다면 학교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상이 공개되는 게 좀 꺼려지네요.

사례 25.

학교의 학생지도부실 소속 선배들이 비비크림을 바른 아이들 반에 들어와 옷 속 가방 속을 수시로 검사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불시에 소지품검사를 하며 머리두발자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정이다

핸드폰은 아침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거며 내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벌청소 및 징계를 받는다.

사례 26.

학생 싸대기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씨X개새X욕한다.

사례 27.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지역에서 오래된 학교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전통을 지킨다는 주장하나만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두발자유를 한다고해서 학생들이 머리색을 빨강고 노랑게 물들이는건 아닙니다. 단지 검은색과는 다른 갈색계통의 색으로 염색을 하는것 이고요, 메니큐어를 바른다고 공부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메니큐어를 바른다고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가 체벌금지 왜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체벌을 할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사고를 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몇몇의 중학생들로 인한 사건이 아무런 죄도없는 시골학교의 중학생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머지 학생들을 소수의 학생들로 부터 지켜내는 것이 아닌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목을 조여오는 격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조건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두는 선생님들 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학생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을 원합니다. 작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사례 28.

학생증 안 가져오면 벌점 주고요 교복단추 1개만 떨어져도 벌점주고여 추운데 교복 위에 다 사복 못 입게 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선도부 투입시켜서 소지품 검사하는데 몸부터 가방 사물함까지 다 뒤져서 불쾌해요... 그리고 저희학교는 그런 거에 상관 없다면서 휴대폰도 걷어요..

저희학교는 학생인권조례랑 상관없다면서 막 원래 규정대로 뺏싸게하고 있구요
선생님들 중 몇 명은 체벌 심하게 하고여 몇 명 생님들께서는 방과후 학교를 강제적으로 시키세요... 그래서 협박받는 기분이여서 불쾌해요...

사례 29.

한 학생의 두발발언으로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채 두발을 밀어버리는 규제로 바꿈
만일 두발이 학교 측에서 원하는 두발이 아닐 시 생기부에 기록하고 징계를 내린다고 협박함

학생들과의 대화 중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말한 학생은 벌점4점을 먹었다.

두발에 관하여 교육청에 신고한 학생부장ooo은 학교측에서 당장 교육청 민원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학년부장직을 박탈시키며 단지 신고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고 함

사례 30.

머리색깔이 밝다며 등교때 억지로 벌을 세워놓고 다음날까지 염색해오라 하고, 선생님이랑 다투었더니 선생님이 벌점을 세 개나 주었고, 선생님이 매로 때리진 않으나 헤드락 걸고 손을 꺾는 등 체벌을 하고, 핸드폰을 강제압수하고,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

부록1. 실태조사 설문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조례 공포/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2년 4월 20일(금)부터 4월 29일(일)까지 열흘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 적용대상 중 인권침해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100일째가 되는 5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적어주신 정보는 실태조사 분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보다 인권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메일 (sshr0126@gmail.com), 미투데이 (/sshr0126), 트위터 (@sshr0126)

1-1. 응답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학교는 어디신가요?

학교이름:

1-2. 응답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학교의 운영주체가 공립/국립인가요, 사립인가요?

① 공립/국립 ② 사립

1-3. 응답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학교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① 일반중학교 ② 기타 중학교(체육중, 국악중 등) ③ 인문계 고등학교 ④ 전문계 고등학교
⑤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국악고 등) ⑥ 특성화 고등학교 ⑧ 기타 고등학교

1-4. 응답하시는 분의 학년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1-5. 응답하시는 분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2012년 1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3. 학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내용에 대해 안내나 설명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① 받은 적 있다. ② 받은 적 없다.

4.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도 새학기 이후 다니시는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세요. (이번 새학기에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보거나 들은 경우 “있음”으로 체크해주세요)

인권침해항목		있음	없음
제12조	두발규제 (염색, 파마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		
제6조	체벌 (기합, 폭언/욕설, 성폭력 모두 포함)		
제25조	교사의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벌점 및 징계 남용		
제9조	야자,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수업과정 이외 학습 강요		
제16조	예배, 법회 등 종교과목 강요 (대체과목이 없거나, 대체과목 선택 시 불이익)		
제13조	일괄적인 휴대폰 강제압수		
제13조	한 반, 한 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소지품검사 강제 실시		
제5조	성적, 외모, 성별, 종교, 집안경제력, 성정체성 등 차이로 인한 차별		
제17조	서명운동, 버튼(뱃지)달기, 학내시위, 전단지 나눠주기 등 표현의 자유 제한		
제18조	학생회, 동아리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규제		

5.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칙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계신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 ②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는다.

- ③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 ④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
- 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

6.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2012년도 7월까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反)인권적인 학교규칙들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계신 학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교규칙을 바꾸었습니까?

- ① 바뀌었다.
- ② 바뀌고 있는 중이다.
- ③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 ④ 모르겠다.

7. 2012년도 새학기 이후 일어난 학생인권침해사태가 있으시면 아래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5월 4일 실태조사결과 발표 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선택사항] 서울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에 관한 소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식을 전해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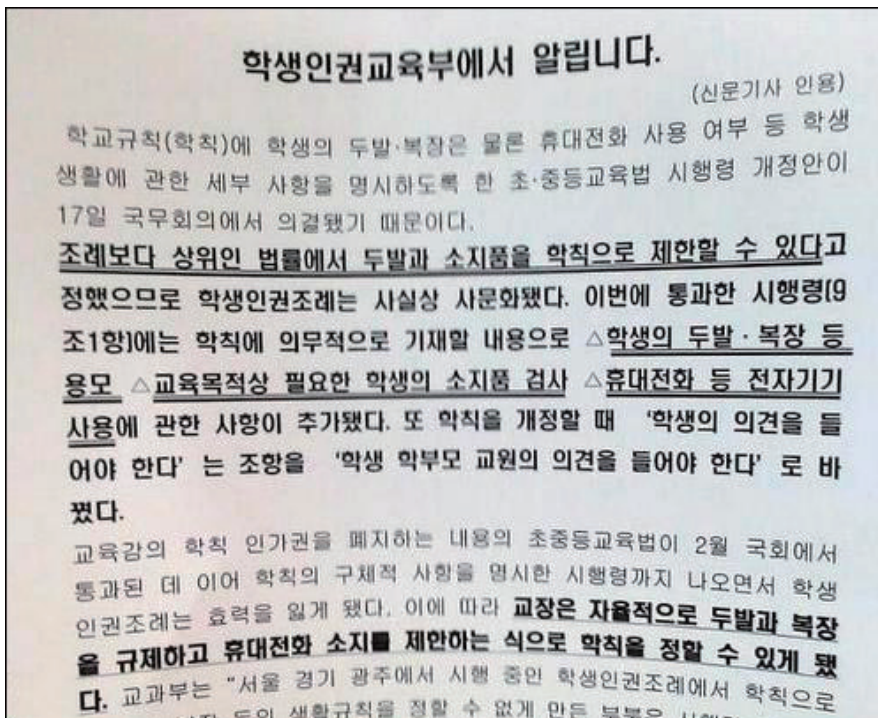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부록2. 참고기사

참고기사 1

“인권조례는 사문화됐다” 경기 고교에 공고문 게시 교과부 시행령에 학교 혼란, 서울·경기·광주 “인권조례 그대로...”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2012.04.23 16:19



▲ 23일 경기 성남의 한 고교가 전체 교실에 붙여놓은 공고문. (© 윤근혁)

23일 경기도 성남지역의 한 고교 교실 전체에 붉은 활자로 “학생인권조례는 사문화됐다” 는 내용이 적힌 공고문이 일제히 게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방침과 정면 상반된 내용을 담은 이 공고문은 이 학교 학생인권교육부에서 붙여놓은 것이었다.

A고교 전체 40개 학급에 붙여놓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이 공고문 제목은 “학생인권부에서 알립니다”. 공고문 가운데 붉은 활자로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개 학급에 일제히, “교장은 두발과 복장 제한 가능”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시문화됐다. …교장은 자율적으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광고문은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이 광고문에 대해 이 학교 객아무개 교장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학교 차원에서 붙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송아무개 학생인권부장은 “내가 오늘(23일) 아침에 전체 교실에 붙여놓은 것”이라면서 “(두발과 복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다는 보도를 인용했을 뿐, 이에 대한 논란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과부는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상실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17일 ‘기존 학생인권조례 적용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정면 반박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A고교 광고문은 법률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행령 발표 뒤 잇달아 보도자료 등을 내어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심각한 법리 해석의 오류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교과부의 보도자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것은 맞지만 시행령 자체에서 ‘두발과 용모 제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곽노현 교육감 “시행령은 인권조례 무력화 위한 것”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이 같은 교과부의 행동은 학교현장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두발 복장 용모에 대해서 학칙에 기재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 학칙의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학교는 학칙보다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2012 OhmyNews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4550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학교에선 지금 앞머리 5cm · 휴대폰 금지...‘서릿발 규제’ 여전 단발 강요에 손톱 위생상태 검사까지...학생들 “감옥같다” 일부 교사, 교육법 개정안 통과되자 “조례 무력화됐다” 강변

[한겨레] 이제훈 기자(nang@hani.co.kr) / 2012.03.08 08:06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탓에 대다수 학생의 머리가 스포츠형이다.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용산구 용산고 교문 앞. 2학년 ㄱ(16)군은 교문 안에서 있는 학생 지도 교사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불안한 손길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ㄱ군은 교문 앞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대부분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짧게 깎은 다른 학생들이 몰려오자 이들에 섞여 학교에 들어갔다. “앞머리 5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걸리면 이름을 적은 뒤 바로 미용실에서 자르고 오라고 하거나 운동장 뛰기를 시켜요.”

학교 앞에서 만난 1학년 ㄱ(15)군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자료집을 보여줬다. 자료집에는 ‘학력신장을 위한 5무(無) 운동’이라며 △지각하지 않기 △수업시간에 졸지 않기 △다투지 않기 △휴대전화 휴대 금지 △담배 피우지 않기 등이 적혀 있었다. ㄱ군의 머리카락은 길이 2cm도 안 돼 보일 만큼 파릇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교사가 ‘웬만하면 스포츠형으로 깎으라’고 해서 짧게 깎았어요. 지금은 점퍼를 입고 있지만,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점퍼도 벗어야 합니다.” 이날 오전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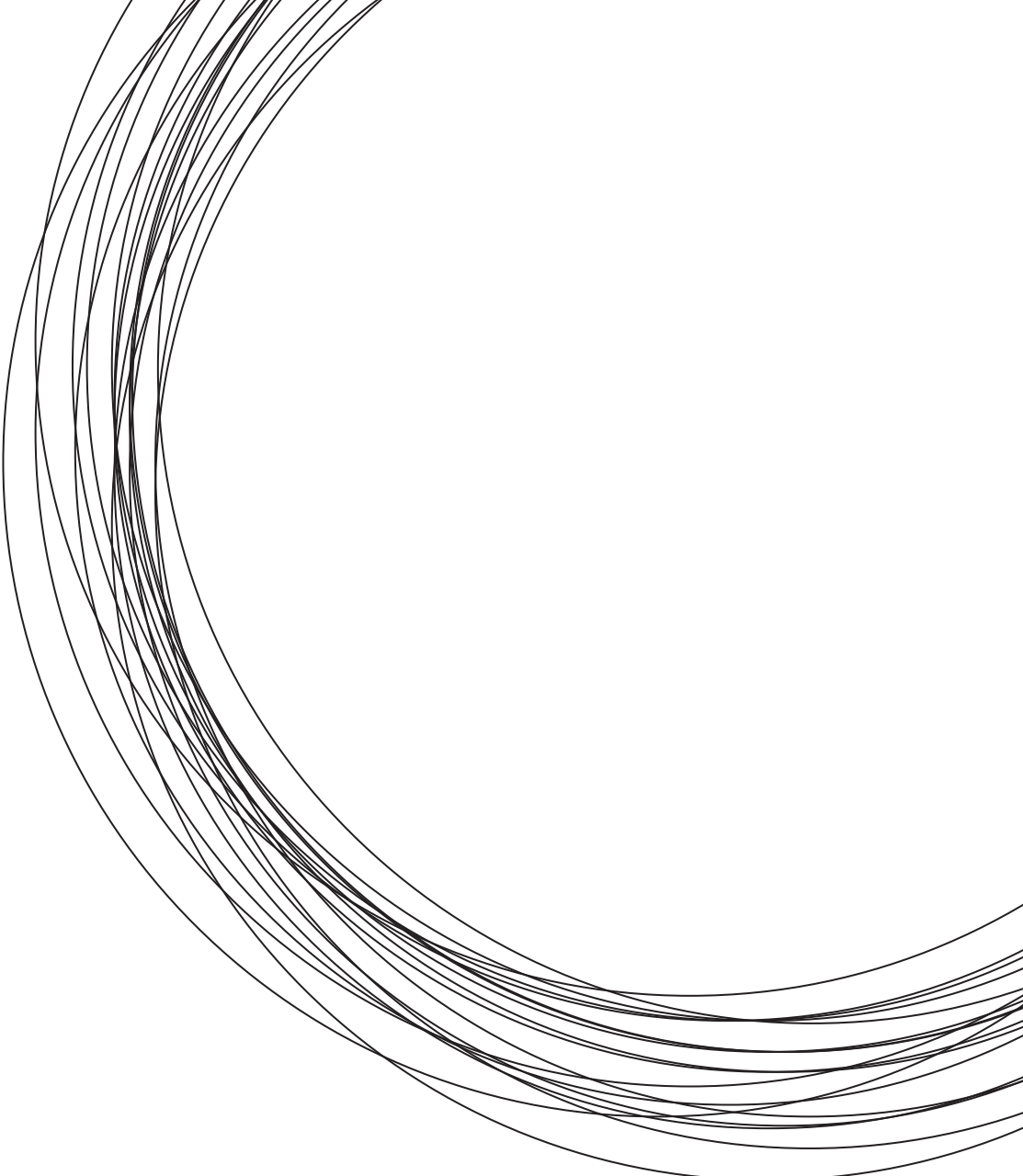
지난 1월27일 서울시교육청이 ‘복장과 두발 등 규제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 일선 학교에서는 두발 단속과 휴대전화 소지 금지, 손톱 검사 등 권위주의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누리집 학생 게시판을 보면, 학교의 학생인권조례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서울 사여고의 한 학생은 “머리를 묶고 다녀도 머리띠를 풀고 자로 길이를 잰다”며 “파마나 염색은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단체로 단발을 하고 다니냐”라고 썼다. 사고의 한 학생도 “교사들이 일일이 교실을 돌면서 다음주부터 손톱 등 위생상태와 두발, 용의복장 등을 검사한다고 한다”며 “무슨 감옥 같다”는 글을 올렸다. 다고의 한 학생은 “두발에 신경 안 쓴다고 성숙한 학생이고 신경 쓴다고 철부지 학생인 게 아닌데, 2012년에 두발 규제 따위에 목숨을 거는 학교가 답답하고 한심하다”며 “교사들이 두발 자유에 반대하는 까닭은 학생에게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자,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했다”고 강변하는 교사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지도 교사가 ‘교육감은 시장 격이고,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 격이니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끝났고, 두발 규제도 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개학한 지 1주일이 되는 9일까지 실태를 점검한 뒤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시교육청 책임교육과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20여개 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규제 사례가 접수돼, 11곳에는 일단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문으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2548.html>



designed by **이예반**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사이트	sshr.or.kr
메일주소	sshr0126@gmail.com
트위터	@sshr0126
미투데이	/sshr0126
페이스북	/sshr0126
후원계좌	국민은행 032902-04-308084 (예금주:김익준)